

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되었습니다.

###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

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  
(의무고용률(2020년 기준): 국가·지자체·공기업 등 3.4%, 민간 3.1%)  
▶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

### 사업주 지원 제도
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등 혜택 지원

**고용장려금 지원**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

**고용시설 자금 융자**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구입·수리·설치 비용 융자

**고용시설·장비 지원**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통근용 승합차 구입, 편의시설 설계·설치·구입·수리비용,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 설치·구입·수리비용 지원

**고용관리비용 지원** 고용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 선임·배치 비용 지원

**보조공학기기 지원**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
**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** 「장애인고용법」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갖춘 사업체 인증(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, 세액감면 혜택) 및 시설의 설치·구입·수리·개선 비용 지원

### 장애인 지원 제도

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, 맞춤훈련 등 각종 취업 지원

**취업알선 지원**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, 취업 후 적응지도

**중증장애인 지원고용** 선배차 후훈련 방식으로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 등,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 등 지원

**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** 단계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

**중증인턴제** 중증장애인의 인턴 근무 기회 제공, 직무능력 향상 도모

**근로지원인 지원**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

**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맞춤훈련 지원**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서비스 및 기업과 약정 체결을 통한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

※ 시기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([www.lead.or.kr](http://www.lead.or.kr)) 참조

“**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**

**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99**

### ■ 직업영역개발 사례

**발달장애인  
‘방진복 특수세정원’**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을 수거, 세탁, 건조, 품질검사, 포장, 납품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

**정신장애인  
‘온라인상품정보원’** 실시간으로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 이미지, 가격 등을 비교 및 검수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직무

**청각장애인  
‘테이블 매니저’** 호텔, 레스토랑, 한정식 식당 등 외식 공간의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,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 직무

※ 더 많은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례가 궁금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(<http://edi.lead.or.kr>) ▶ EDI Report ▶ 연구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■ 고용사례

발달장애인 호텔리어, 편의점 스태프,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, 중증장애인 바이럴 마케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
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<http://edu.lead.or.kr>) ▶ 자료실 ▶ 우수고용사례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장애인고용 사례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(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)

**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**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단,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·개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

※ 관련 법령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동법 제86조(과태료)

자세한 교육방법 및  
교육자료, 교육증빙 양식은  
**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
교육포털([edu.lead.or.kr](http://edu.lead.or.kr))**에서  
확인하세요.



#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

고용노동부



문의 : 1588-1519 [edu.lead.or.kr](http://edu.lead.or.kr)

## 장애인 무엇일까요?

- '장애'는 진화하는 개념이며,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,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.(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)
-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릅니다.

##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%에 해당합니다.  
※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등록현황, 보건복지부
- 장애 발생 원인의 73.5%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  
※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,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(장애감수성)이 필요합니다.

##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

-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분류됩니다.

### I. 신체적 장애

- 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|
| <b>지체 장애</b>  | 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 등의 장애, 척수장애 등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<br>▶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 |
| <b>뇌병변 장애</b> | 뇌성마비, 뇌졸증,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해 보행장애, 일상생활활동작의 제한 등이 생기는 복합적인 장애<br>▶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함께 걸을 때는 속도에 맞춰 걷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시각 장애</b>  |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<br>▶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.  |
| <b>청각 장애</b>  |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청력장애 또는 평형기능장애<br>▶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(구화, 필담 등)  |
| <b>언어 장애</b>  |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인한 언어장애, 음성장애, 구어장애<br>▶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대화를 할 때 얼굴,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. |

### 안면 장애

안면부의 추상, 함몰,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
▶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여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,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.

### 신장 장애

신장 기능 이상(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를 포함)  
▶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,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

### 심장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 
▶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.

### 간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간 기능 이상  
▶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# 호흡기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
▶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,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# 장루·요루장애

배변과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 
▶ 탈의가 짧은 근무환경,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### 뇌전증 장애

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, 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
▶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.

##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
■ 신체적,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1차 UN총회(2006.12.13.)에서 'UN장애인권리협약'이 채택되었습니다.

-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,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,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

■ 우리나라는 2007년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습니다.

-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보장  
-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

\* 정당한 편의란?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, 기구, 시설 등을 말한다.

■ 그 외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(1998년)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.

■ 장애인의 '인권', '기본적인 자유'가 침해당한다면?

**권리구제 신청** 피해사례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▶ (국가인권위원회)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에 통보 ▶ 시정권고 불이행 시 ▶ (법무부장관) 시정명령 발동 ▶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
**고충처리위원회 신고** 피해사례 발생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▶ (고충처리위원회) 10일 이내 조치 및 결과 통보

※ 30명 이상 사업장 '고충처리위원회 필수' 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)



-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입니다. 동일한 장애유형이라고 해도 개별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.